

예 천 군



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703호 2026. 4. 30.(목)

선 람	기 관 의 장

조 례

- 예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예천군 조례 제2741호)
- 예천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예천군 조례 제2742호)
- 예천군 남산공원 미디어아트 관리 및 운영 조례(예천군 조례 제2743호)
- 예천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예천군 조례 제2744호)
- 예천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예천군 조례 제2745호)
- 예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예천군 조례 제2746호)
- 예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예천군 조례 제2747호)
- 예천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예천군 조례 제2748호)
- 예천군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예천군 조례 제2749호)
-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예천군 조례 제2750호)

고 시

- 송월리(정착마을) 마을연결도로 개설공사를 위한 예천 군계획시설(도로 및 녹지)사업 실시 계획 인가 고시(예천군 고시 제2026-40호)
- 예천 군계획시설(공공청사) 기반시설 조성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예천군 고시 제2026-41호)

공 고

- 예천 군관리계획(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안) 공람공고(예천군 공고 제2026-738호)
- 예천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예천군 공고 제2026-743호)
- 예천군 모범공무원 포상 및 향토개발상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예천군 공고 제2026-744호)

회 람									
--------	--	--	--	--	--	--	--	--	--

발 행 예천군 편찬 홍보소통과(전화 650-6071)

예천군의회에서 의결된 예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4월 30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조례 제2741호

예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예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예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예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제3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예천군수의 심의 및 자문기구를 말한다.
2. “전문위원회”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심의·자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위원회를 말한다.
3. “실무협의체”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

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4. “실무분과”란 실무협의체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5. “읍·면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읍·면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민관협력을 바탕으로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한 조직을 말한다.

제3조(기능) 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자문한다.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 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읍·면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 법인 이사의 추천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협의체 기구) 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표협의체, 전문위원회,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읍·면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읍·면협의체”라 한다), 운영위원회 및 사무국을 둔다.

제5조(대표협의체) ① 대표협의체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받

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군수·사회복지과장·보건소장·실무협의회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하되, 공무원인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촉직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위원장 또는 실무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제6조(전문위원회) 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7항에 따라 협의체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민간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문화복지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보건소장, 사회복지과장, 주민행복과장 및 예천군수가 지정하는 직위에 있는 공무원
2.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문경예천지사장, 국민연금관리공단 문경지사장, 예천군사회복지협회장, 예천군사회복지사협회장, 예천군건축사협회장, 예천군의사회회장, 예천군약사회회장, 예천군한의사회회장 및 지역사회보건복지 분야에 대하여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운영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소집할 수 있으며,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보건복지 증진 등에 직접 기여한 공무원 또는 지역사회보건복지와 관계되는 공무원 등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자문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장이 된다.

⑥ 위원회에서 심의안건에 대한 이의 제기가 있을 경우 대표협의체 안건으로 상정하여 처리한다.

⑦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표협의체 의결을 거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실무협의체) ①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이하 “실무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복지기획팀장과 보건행정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자원개발 분과를 둘 수 있다.

제8조(실무분과) ①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분과의 위원은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보장·보건 의료 등 업무담당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제9조(읍·면 협의체) ① 읍·면 지역의 사회보장대상자 발굴 및 자원 연계를 위해 읍·면협의체를 두며, 읍·면협의체 위원은 읍·면별 10명 이상으로 하되 위원장은 읍·면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된 사람이 공동으로 담당한다.

② 읍·면협의체의 위원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면장의 추천으로 군수가 위촉한다.

제10조(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는 민간위원장, 주무과장, 민간부위원장, 실무위원장, 분과위원장 4명, 국장 등 9명으로 구성·운영한다.

제11조(위원명단 공개) 군수 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제5조제2항, 제3항 및 제6조제1항에 의한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촉한 위원의 명단을 군보와 예천군 누리집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를 대표하고 당해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의 임기) 각 협의체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대표협의체의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실무협의체의 위원의 경우에는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해촉할 수 있다.

제15조(간사) ①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명의 간사를 둔다.

② 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제16조(사무국) ① 각 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상근의 유급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41조제2항에 관한 사항
2. 행정실무 및 예산회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제17조(회의 등)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군수 또는 각 협의체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회의록) ① 각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 및 의결사항
4. 심의 및 의결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당해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9조(의결사항의 처리) 군수는 대표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1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22조(회의수당) 각 협의체에 출석한 위원·관계인 등에게는 「예천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협의체 운영지원) 군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국유·공유 재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지역사회차원의 보장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심의·자문을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정의에 관한 조항 신설(제2조)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제3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장의 심의 및 자문기구
- 전문위원회 : 대표협의체의 효율적 심의·자문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
- 실무협의체 :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
- 실무분과 : 실무협의체의 효율적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
- 읍·면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읍면 단위 사회보장 사업에 의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발굴·연계 업무 등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

나. 협의체 기구 및 전문위원회에 관한 조항 신설(제4조, 제6조)

- 대표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읍·면협의체, 운영위원회 및 사무국을 둔

다. 협의체 구성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제5조~제9조)

예천군의회에서 의결된 예천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4월 30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조례 제2742호

예천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예천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전단 중 “취학 전 아동과 함께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경북도청 신도시(안동시 풍천면)”로, “아동의”를 “취학 전 아동의”로, “보호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보호자”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비영리법인·단체 등에”를 “비영리법인·단체, 개인에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 장난감도서관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일반회원 및 위탁운영체 범위를 변경하여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보호자 정의 삭제 (제2조)

나. 장난감도서관 회원의 범위 변경(제5조)

- 일반회원 범위 : (당초) 예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 (변경) 예천군 및 경북도청 신도시(안동시 풍천면)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다. 장난감도서관 운영 및 위탁 대상 변경(제11조)

- (당초) 비영리법인·단체 등 → (변경) 비영리법인·단체, 개인

예천군의회에서 의결된 예천군 남산공원 미디어아트 관리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4월 30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조례 제2743호

예천군 남산공원 미디어아트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천군 남산공원 미디어아트의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문화복지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및 시설) ① 예천군 남산공원 미디어아트(이하 “미디어아트”라 한다)의 위치는 예천읍 남산공원 일원으로 한다.

② 미디어아트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표소 및 관리사무실
2. 기념품 판매시설 및 카페
3. 미디어아트 산책로 및 시설물
4. 그 밖의 편의시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용자”란 유료 또는 무료로 입장을 하는 사람을 말하며, “입장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2. “군민”이란 현재 예천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자를 말한다.

3. “예천사랑상품권”이란 「예천군 예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발행된 예천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4조(이용시간) 미디어아트의 이용시간은 일몰 이후부터 23시까지로 한다.

단,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용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개장 및 휴장) ① 개장일은 제5조2항의 휴장일을 제외한 날로 한다.

② 미디어아트의 휴장일은 다음과 같다.

1. 1월 1일

2.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법정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 평일을 휴장일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디어아트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개장 및 휴장일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입장료의 납부) 미디어아트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1에 따른 입장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입장권의 매표 시간은 관람 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제7조(입장료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입장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이용자가 입장료를 착오로 납부하였을 경우

2. 이용자의 환불 요청이 있을 경우. 다만, 입장하지 않은 사람에 한정한다.

3. 긴급 복구가 필요한 경우 등 시설의 특별한 사정으로 이용이 취소된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 등의 사유로 시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제8조(입장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환급 상품권을 제외한 입장료에 대하여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감면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등 증명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1. 전액 감면

가. 국민,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원

나. 5세 미만

2. 50퍼센트 감면

- 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예천군에 주소를 둔 사람
- 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 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 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사.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자.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차.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타.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 가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등록 포로
- 파. 19세 미만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두 명 이상 양육하는 다자녀가정의 구성원

3. 20퍼센트 감면 : 15인 이상의 단체 이용자

- ② 제1항의 감면 규정에도 불구하고 운영자는 미디어아트 이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장료를 감면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감면사유가 중복될 때에는 감면율이 높은 것 한 가지만 적용한다.

제9조(상품권 교부) ① 군수는 소비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입장권을 구입한 사람 중 모든 구매자에게는 5천원 상당의 상품권을 교부할 수 있다. 단, 전

액 감면으로 입장한 사람은 제외한다.

② 상품권의 교부 방법은 매표원이 확인한 후 지류 상품권을 직접 전달한다.

③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예천군 예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른다.

제10조(이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1. 술 또는 약물에 취하여 이용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
2.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방해할 수 있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애완동물(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동반한 사람
4. 정당한 이유 없이 안전관리요원의 안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
5. 그밖에 시설의 보호, 공공질서의 유지 등을 위하여 입장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등) ① 군수는 미디어아트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 등에 대행하게 하거나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보험가입) 군수는 미디어아트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3조(손해배상) 이용자 및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및 전시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원상복구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남산공원 미디어아트 입장료

구 분		입장료(원)	환급 상품권	비 고
입장료/명	청소년 및 성인	12,000원	5,000원	
	소인	10,000원	5,000원	
<비 고> 1. 이용자 구분 가. 청소년 및 성인 : 13세 이상 나. 소인 : 5세 이상 13세 미만 2. 감면대상 가. 전액감면 : 5세 미만, 국빈,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원 나. 50퍼센트 감면 : 예천군민,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가정, 독립유공자 등 다. 20퍼센트 감면 : 15인 이상 단체 ※ 감면적용 : 환급 상품권을 제외한 입장료에 대하여 감면 적용				

◇제정이유

- 예천군 남산공원 미디어아트 신규 설치·운영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미디어아트의 위치 및 정의 규정(제1조 ~ 제3조)

- 예천군 남산공원 미디어아트의 위치는 예천읍 남산공원 일원이며, 미디어아트의 시설은 매표소, 관리사무실, 기념품 판매시설, 카페, 미디어아트 산책로 및 그 밖의 시설물 등으로 함.

나. 미디어아트 시설 운영(제6조 ~ 제9조)

- 이용 시간 : 일몰 이후 ~ 23:00
 - 휴장일 : 1월 1일,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법정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 평일을 휴장일로 한다)
- 입장료
 - 청소년 및 성인(13세 이상) : 12,000원
(예천사랑상품권 5,000원 환급)
 - 소인(5세 이상~13세 미만) : 10,000원
(예천사랑상품권 5,000원 환급)
 - 입장료 감면(예천사랑상품권을 제외한 금액)
 - 전액 감면 : 국빈 및 외교사절단, 5세 미만 등
 - 50% 감면 : 군민, 장애인, 수급자, 한부모가정, 다자녀가정,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등
 - 20% 감면 : 15인 이상 단체 이용자

예천군의회에서 의결된 예천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4월 30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조례 제2744호

예천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예천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공원시설의 설치 등)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1항 및 제1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도시공원에 동물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다.

1. 문화공원 및 체육공원
2. 1만제곱미터 이상의 근린공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인구 증가에 따라 도시공원 내 동물놀이터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근린공원 면적 기준 및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공원 이용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 근린공원 내 동물놀이터 설치 규정 신설(제10조)
 - 문화공원 및 체육공원 내 동물놀이터 설치 허용
 - 동물놀이터 설치가능 근린공원 면적 기준 : 1만제곱미터 이상

예천군의회에서 의결된 예천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4월 30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조례 제2745호

예천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

예천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 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각각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한다.

제3장의 제목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예천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예천군 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 제9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천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이 조례의 예천군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본다.

◇개정이유

- 상위법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주요내용

- 위원회 명칭 변경(제8조~제9조)

: 예천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 예천군 기후위기대응위원회

예천군의회에서 의결된 예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4월 30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조례 제2746호

예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

예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예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제71조에 따라 예천군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임위원회의 설치) 예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의회운영위원회: 5명
2. 기획행정위원회: 4명
3. 경제건설위원회: 4명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1. 의회운영위원회

가.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규칙 및 의회 운영과 관련된 각종 행정규칙에 관한 사항

다. 의회사무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2. 기획행정위원회

가. 기획예산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행정문화복지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체육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3. 경제건설위원회

가. 경제농림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건설도시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곤충연구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③ 예천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도 속하지 아니하거나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한다.

제4조(상임위원회의 위원) ① 예천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기획행정위원회 또는 경제건설위원회 중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겸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제5조(상임위원의 임기) ① 상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가 폐회 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상임위원을 선임한 날의 전날까지 재임한다.

② 보임(補任)되거나 개선(改選)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상임위원장)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② 상임위원장은 선임된 해당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7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둘 이상의 상임위원회와 관련된 안건이나 특정한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의원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③ 제2항에 따른 윤리특별위원회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예산결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다음 연도 6월 30일 까지로 한다.

제9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거자가, 최다선거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선임) ① 상임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

② 특별위원회 위원은 상임위원 중에서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선임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최일시를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12조(부위원장) ① 위원회에 부위원장 1명을 둔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④ 상임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이 된다.

제13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 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4조(준용규정) 위원회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의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 상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에 필요한 제반 근거를 마련하고, 윤리특별위원회의 상설화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 등을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상임위원회의 설치 및 그 위원 정수(제2조)

- 의회운영위원회(5명), 기획행정위원회(4명), 경제건설위원회(4명)로 구성

나. 의원의 상임위원회 배정(제4조)

- 의원은 상임위원회 중 하나의 상임위원으로 배정. 단, 의회운영위원회는 겸임 가능

다. 상임위원의 임기(제5조)

-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지방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가 폐회 중 만료 시 다음 상임위원을 선임한 날의 전날까지 재임

라. 상임위원장의 선거와 임기(제6조)

- 의장 선거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
-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동일

마.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윤리특별위원회의 상설화(제7조)

- 특정한 안건의 효율적 심사 등을 위하여 본회의 의결로 구성
- 의원의 윤리강령 등 심사를 위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상설

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제8조)

- 예결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로 함

사. 상임위원과 특별위원회 위원의 선임(제10조)

- 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

아. 부위원장의 선출과 직무(제12조)

-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
- 부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됨

예천군의회에서 의결된 예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4월 30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조례 제2747호

예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예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예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를 “예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윤리실천 규범”을 “윤리실천규범”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의한다”를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검직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 검직사실 부존재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제2항 중 “서면으로”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예천군수”를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제한 사항을 신고”를 “제한사항을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군수에게 통보”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영리행위의 제한) ① 의원은 「예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9조의 영농·영어조합법인 및 농업·어업회사법인의 임직원을 제외한 농·어업인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리행위 제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③ 의원은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군이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단체
2. 군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단체
3. 군으로부터 운영비 또는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단체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98조”를 “법 제98조 및 「예천군의회 회의 규칙」”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후단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징계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7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삭제

하며, 같은 조 제6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호(종전의 제6호) 중 “거부”를 “거부한 경우”로 한다.

1. 제2조 및 제3조의 품위유지·청렴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제5조의 검직신고와 관련하여 이를 위반하거나 허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
3. 제6조의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와 관련하여 이를 위반하거나 허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제6조의2의 영리행위 제한을 위반하거나 군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6. 그 밖에 「예천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에서 규정하는 행동강령을 위반한 경우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1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징계기준(제7조 관련)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적용기준
1. 품위유지 위반	- 음주운전 - 면허취소 - 면허정지 - 범법행위 - 금고 미만 확정판결 - 각종 비위행위를 통한 범법행위 - 비리 비위행위의 벌금 이하 확정 -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등 - 모욕, 폭언, 갑질 등 기타 품위손상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경고, 공개사과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2. 청렴의무 위반	- 탈세 - 면탈 - 금품수수 - 인사청탁, 이권개입 등의 금지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3. 겸직금지 위반	- 겸직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 겸직 허위신고 - 미신고, 허위신고 -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법 제43조제6항 관련)	경고 경고, 공개사과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4.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위반	-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허위신고 - 미신고, 허위신고 - 계약체결 제한 위반	경고 경고, 공개사과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5. 영리행위 제한 위반	- 소관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 영리거래금지 위반 -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등 위반	공개사과, 출석정지 (상임위원회 변경)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경고, 공개사과
6. 직무관련 금품 등 취득금지	의정활동과 관련 찬조금 수수	공개사과, 출석정지
7.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 예산의 목적 외 용도 사용 - 업무추진비 등	공개사과 공개사과
8. 회피의무	회피의무 위반	경고, 공개사과
9. 회의무단불참	회기당 3회 이상	경고, 공개사과

연번		검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건으로 작성 후 연번 부여			
예천군의회 의원 검직(변경)신고서					
소속정당			선거구분	지역구	
성명	한글			비례대표	
	한자		생년월일		
검직내용	기관단체명				
	직위		기간	~	
	수행업무내역				
	분야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			
	영리성 여부	영리 ☐ , 비영리 ☐			
	보수수령 여부	보수수령 ☐ , 보수 미수령 ☐			
	보수 수령액 (연간)	근로소득	원		
		근로소득 이외 소득	원		
계		원			
주소			전화번호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예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검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예천군의회 의원 (인) 예천군의회회장 귀하					

검직사실 부존재 확인서

소속정당			선거구분	지역구	
성명	한글			비례대표	
	한자			생년월일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예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검직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예천군의회의원 (인)

예천군의회의회장 귀하

예천군의회 의원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변경) 신고서									
성명					생년월일				
수의계약체결제한관련자		총명							
		본인 관련자명				본인, 직계존·비속명			
		배우자 관련자명		유무		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명			
				-					
연번	관계	성명	생년월일	사업자명(상호, 법인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	지분율	기타
1									
2									
3									
4									
5									
6									
7									
8									
9									
10									
※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 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신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예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예천군의회 의원 (인) 예천군의회회의장 귀하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제44조제5항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소관 상임위원회 직무 관련 영리행위 제한 규정을 반영하고, 겸직신고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겸직사실 부존재 확인서 징구 근거 마련

(제5조제1항 단서 및 별지 제1호의2서식 신설)

나. 의원의 영리행위 제한 관련 사항 규정(제6조의2 신설)

- 소관 상임위원회 직무 관련 영리행위 금지 등

다. 징계 기준 정비(제7조 및 별표)

- 징계 대상 행위로 품위유지·청렴 의무 위반과 의원 행동강령 위반을 명시

예천군의회에서 의결된 예천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4월 30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조례 제2748호

예천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정례회의”를 “정례회와 임시회의 회기 및 그”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연간 총회의 일수)”를 “(연간 회의 총일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총회의”를 “총 회의”로 한다.

제2조 제목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90일을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3조의 제목 “(회기운영)”을 “(정례회의 회기)”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정례회는 매년 2회 개최하며, 각 회기”

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집회)”를 “(정례회의 집회)”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후단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집회일이 토요일이거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또는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관공서의 정상 근무일에 집회한다.

제4조제1호 단서 중 “총선거”를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의회”를 “본회의”로, “9월 5일”을 “9월 중”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심의)”를 “(심의안건)”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정례회는 법 제144조”를 “정례회에서는 법 제144조제2항”으로, “법 제150조”를 “법 제150조제1항”으로, “결산”을 “결산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정례회”를 “정례회에서”로, “법 제142조”를 “법 제142조제2항”으로 한다.

제6조 본문 중 “법 제54조3항”을 “법 제54조제3항”으로, “의회”를 “예천군의 회”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의회 부의장”을 “부의장”으로 한다.

제7조 중 “법 제76조”를 “법 제76조제1항”으로, “군수나 재적의원”을 “재적의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 연간 회의 총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를 의결로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그 밖의 용어 및 자구를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 연간 회의 총일수를 초과하는 집회일 연장 근거 규정(제2조 단서 신설)
 - － 본회의 의결로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

예천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4월 30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조례 제2749호

예천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의하여 예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따라 예천군의회”로, “관계공무원”을 “관계공무원과 그 밖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대상”으로 한다.

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회”를 “예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3호 중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소속행정기관장”을 “제129조에 따른 소속 행정기관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4호 중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을 “제3호의 소속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으로, “동일직급”을 “같은 직급”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예천군의회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천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
까지에 따른 지방공기업, 수탁(임)기관·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임원에게
출석·답변을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를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이 투입되는 공적(公的) 영역인 지방공기업, 수탁(임)기관·단체 및 출자·출연기관의 임원으로 확대하여 행정에 대한 효과적인 견제와 감시를 통해 의회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 관계공무원 외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 확대
(제2조제2항 신설)
 - 지방공기업, 수탁(임)기관·단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임원

예천군의회에서 의결된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4월 30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조례 제2750호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천군의회가 행하는”을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예천군의회가 실시하는”으로, “관한 절차 및 기타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감사)”를 “(행정사무감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본회의의 의결로 본회의에서나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로, “행한다”를 “실시한다”로 한다.

제2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조제2항 중 “본회의 또는”을 “상임위원회 또는”으로, “작성하여”를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로, “언어”를 “받아”로, “의하여 행한다”를 “따라 실시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감사계획을”을 “감사계획서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지체없이”를 “지체 없이”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조사)”를 “(행정사무조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행할”을 “실시할”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를 “제1항에 따른”으로, “범위”를 “범위, 조사할 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2항의 조사발의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른 조사의 발의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본의회 또는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을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위원회 편성”으로, “언어”를 “받아”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반려하여야 한다”를 “반려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즉시”를 “지체 없이”로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의 발의가 의결되면 지체 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거나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실시할 위원회를 확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군

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군의 소속 행정기관과 법 제131조 및 제134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 및 하부 행정기구

3. 군이 설치한 법 제16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제5조제1항제4호 중 “법 제117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본회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5조제1항제5호 본문 중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특히”를 “특별히”로, “경우에”를 “경우에는”으로, “한하여”를 “한정하여”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감사 또는 조사 대상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3조에 따른 군의 사무범위 내의 사무
2. 법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국가사무와 경상북도의 위임사무 중 국회와 경상북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

제7조 중 “이의 검토”를 “이를 검토한”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전단 중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를 “소관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이하 “감사·조사위원회등”이라 한다)”로, “군수 및 관계공무원 또는 그”를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로, “자의 출석, 증언 및 의견진술을”을 “사람(이하 “군수등”이라 한다)을 출석하게 하여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경우에 있어”를 “경우”로, “보고 및 서류의 제출, 군수,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 증언 및”을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의 요구, 군수등의 출석·증언 또는”으로, “서류제출일, 출석일”을 “보고·서류 제출일, 출석·증언 또는 의견진술일”로, “이를 행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의”를 “군수등 또는 관계기관은”으로,

“소속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조례”로,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를 “감사·조사위원회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군수·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를 “군수등이”로, “이유서를 출석·증언이나”를 “사유서를 출석·증언 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를 “군수등이”로, “의하여 의장이 통보 등으로”를 “따라 의장이 통보하여”로 한다.

제9조의2제3항 본문 중 “기립하여 엄숙하게 낭독케하고 서명날인 하게”를 “일어서서 낭독하고 서명하게”로 한다.

제9조의3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5호까지가 정하는”을 “제5호까지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속 공무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증인 중 허위 진술을 했거나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

제10조 중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를 “감사·조사위원회등”으로, “기타”를 “그 밖”으로 한다.

제11조 단서 중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를 “감사·조사위원회등의”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을 “감사·조사위원회등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를 “감사·조사위원회등”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를 “감사·조사위원회등이”로, “감

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을 “그 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체 없이”로, “조사보고서를 지체없이 제출하고”를 “조사 보고서를 제출하고,”로 한다.

제15조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7조 중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를 “감사·조사위원회등”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 상임위원회 구성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조사 실시 근거 등을 규정하고, 그 밖의 용어 및 자구를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조사 실시 근거 규정(제2조·제3조)

나. 관계법률 인용을 통한 감사 또는 조사 대상 기관의 법적 성격 명확화(제5조)

다. 감사 또는 조사 대상 사무의 기점 삭제(제6조제2항 삭제)

- 감사 또는 조사 대상 사무를 의회구성일 이후의 사무로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함

예천군 고시 제2026-40호

송월리(정착마을) 마을연결도로 개설공사를 위한 예천 군계획시설(도로 및 녹지)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예천군 고시 제2025-149호(2025.11.27.)로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된 군계획시설(도로 및 녹지)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그 내용을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4월 30일

예 천 군 수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예천군 은풍면 송월리 92-14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군계획시설(도로 및 녹지)사업
- 명 칭 : 송월리(정착마을) 마을연결도로 개설공사

3. 사업의 면적 및 내용

- 면 적 : 716㎡(소로3-8호선:386㎡, 경관녹지2:72㎡, 경관녹지7:258㎡)
- 내 용 : 토공·구조물공·포장공, 부대공 등 1식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예천군수(농촌활력과)
- 주소 :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2026.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물건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 명세 및 소유자 권리자의 성명 주소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목	면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
	읍면	리	지번		공부상	편입				주 소	성 명	종 류	성 명	
						계	도로	녹지2	녹지7					
합 계					7,734	716	386	72	258					
1	예천	송월	91-4	답	275	77	40	5	32		예천군			
2	예천	송월	91-5	답	763	11	11	-	-		예천군			
3	예천	송월	92-14	전	930	153	106	47	-		예천군			
4	예천	송월	92-28	전	212	8	8	-	-		예천군			
5	예천	송월	669-3	도로	5,554	467	221	20	226		국(국토교통부)			

7. 관계도서 : 게재 생략(도시과 및 농촌활력과에 비치)

8. 기타 상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도시과(☎054-650-6346) 및 농촌활력과(☎054-650-73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고시 제2026-41호

예천 군계획시설(공공청사) 기반시설 조성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예천군 고시 제2025-76호(2025.6.19.)로 군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 및 지형도면 등 고시된 군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의 기반시설 조성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그 내용을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4월 30일

예 천 군 수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예천군 예천읍 청북리 855-1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군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
- 명 칭 : 예천경찰서 이전부지 기반시설 조성사업

3. 사업의 면적 및 내용

- 면 적 : 12,325㎡
- 내 용 : 토공·배수공·구조물공, 포장공 등 1식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예천군수(재무과)
- 주소 :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2027.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물건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 명세 및 소유자 권리자의 성명 주소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목	면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
	읍면	리	지번		공부상	편입	주 소	성 명	종 류	성 명	
합계					13,268	12,325					
1	예천	청북	847	전	3,623	3,623		예천군			
2	예천	청북	847-1	도	799	105		예천군			
3	예천	청북	847-2	전	595	595		예천군			
4	예천	청북	849-2	전	1,806	1,557		예천군			
5	예천	청북	855-1	전	1,052	1,052		예천군			
6	예천	청북	855-11	임	5,393	5,393		예천군			

7. 관계도서 : 게재 생략(도시과 및 재무과에 비치)

8. 기타 상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도시과(☎054-650-6346) 및 재무과
(☎054-650-613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천 군관리계획(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안) 공람공고

지보면 마산리 일원의 비룡산 전망대공원 조성계획 변경을 위한 군관리 계획(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4월 30일

예 천 군 수

1. 공람기간 : 2026. 4. 30. ~ 2026. 5. 14. (14일간)
2. 공람장소 : 예천군청 도시과, 문화관광과
3. 공람내용 : 군관리계획(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안)
4. 관련조서 및 도면 : 붙임참고
※ 붙임 결정도(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생략)는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5. 의견제출 : 예천군청 도시과로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
6. 기타 상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도시과(☎054-650-6346) 및 문화관광과(☎054-650-690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예천 군관리계획(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조서

1. 군계획시설 결정(변경)(안)조서

가. 공간시설 : 공원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비룡산 전망대공원	문화공원	지보면 마산리	19,100	증) 725	19,825	예천고제1호 (2022.1.6.)	경미한 변경

■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공 원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	비룡산 전망대공원	공원 구역 변경 -A = 19,100㎡ → 19,825㎡ (증:725㎡)	기 결정된 비룡산 전망대공원의 진출입 동선 확보를 위한 구역계 변경

2.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안)조서

가. 총괄표

구분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동수 (동)	바닥면적(㎡)		연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19,100	19,825	7,078	6,925	1	350	321.24	1,450	1,447.92	-	
기 반 시 설	소 계	2,798	4,384	2,798	4,384	-	-	-	-	-	-	
	도 로	2,798	4,384	2,798	4,384	-	-	-	-	-	-	
편 의 시 설		4,280	2,541	4,280	2,541	1	350	321.24	1,450	1,447.92	-	지상 4층
녹 지		12,022	12,900	-	-	-	-	-	-	-	-	
공원시설률 (법정제한없음)		6,925 / 19,825 x 100 = 34.9%										
공원건폐율 (법정 20%이하)		321.24 / 19,825 x 100 = 1.6%										

나. 세부시설조서

구 분	시설명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동)	건축물				공작물 (기)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바닥면적(㎡)				연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19,100	19,825	7,078	6,925	-	1	350	321.24	1,450	1,447.92		
기 반 시 설	소 계				2,798	4,384	2,798	4,384	-	-	-	-	-	-	-	
	도 로			전지역	2,798	4,384	2,798	4,384	-	-	-	-	-	-	-	
편 의 시 설	소 계				4,280	2,541	4,280	2,541	-	1	350	321.24	1,450	1,447.92	-	
	전망대	전망대, 휴게음 식점	1-1	마산리 산113-1일원	4,165	2,487	4,165	2,487	-	1	350	321.24	1,450	1,447.92	-	
	주차장		1-2	마산리 산113-7 일원	115	54	115	54	-	-	-	-	-	-	-	
녹지				전지역	12,022	12,900	-	-	-	-	-	-	-	-	-	

■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도로	• 면적 변경 A = 2,798㎡ → 4,384㎡ (증 1,586㎡)	• 전망대 진출입로 확보에 따른 면적 증가
1-1	전망대, 휴게음식점	• 시설명 추가 및 면적 변경 A = 4,165㎡ → 2,487㎡ (감 1,678㎡)	• 조성계획변경에 따른 전망대 내 휴게음식점 추가 및 면적 감소
1-2	주차장	• 위치이동 및 면적 변경 A = 115㎡ → 54㎡ (감 61㎡)	• 조성계획변경에 따른 위치이동 및 면적 감소
-	녹지	• 면적 변경 A = 12,022㎡ → 12,900㎡ (증 878㎡)	• 조성계획변경에 따른 면적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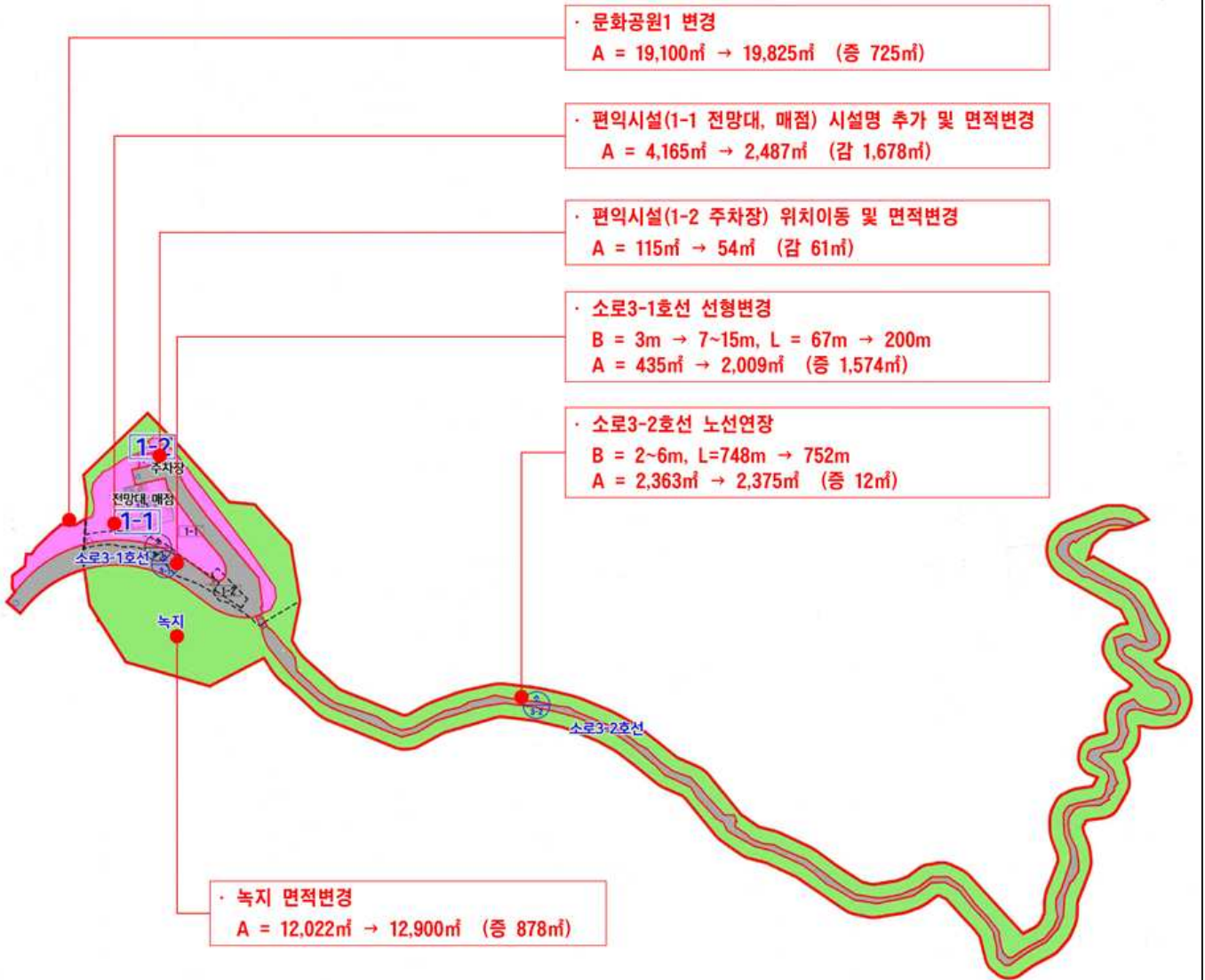
다. 도로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기정	합계	2개 노선			815	2,798				
변경					952	4,384				
기정	소로	3	1	3	67	435	진입도로	마산리 산113-1	마산리 산113-1	
변경	소로	3	1	7~15	200	2,009	진입도로	마산리 산113-1	마산리 산113-1	
기정	소로	3	2	2~6	748	2,363	산책로	마산리 966-1	마산리 산113-1	
변경	소로	3	2	2~6	752	2,375	산책로	마산리 966-1	마산리 산113-1	

■ 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3-1	소로3-1	선형변경 $B = 3m \rightarrow 7\sim 15m,$ $L = 67m \rightarrow 200m,$ $A = 435m^2 \rightarrow 2,009m^2$ (증 1,574㎡)	진출입로 확보에 따른 도로 선형변경
소로3-2	소로3-2	노선연장 $B = 2\sim 6m,$ $L = 748m \rightarrow 752m,$ $A = 2,363m^2 \rightarrow 2,375m^2$ (증 12㎡)	소로 3-1호선 변경에 따른 노선연장

[예천 군관리계획(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안)도]



■ 조성계획총괄표

구 분	번 호	시 설 명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변경후		
총 합 계				19,100	증) 725	19,825	100.0	
시 설 총 계				7,078	감) 153	6,925	34.9	
도 로	소 계			2,798	증) 1,586	4,384	22.1	
	소로3-1	진입도로		435	증) 1,574	2,009		
	소로3-2	산책로		2,363	증) 12	2,375		
편익시설	소 계			4,280	감) 1,739	2,541	12.8	
	1-1	전망대, 유아음악점		4,165	감) 1,678	2,487		건축물 1동
	1-2	주차장		115	감) 61	54		
녹 지 총 계				12,022	증) 878	12,900	65.1	
녹 지				12,022	증) 878	12,900		

예천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포상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30일

예 천 군



1. 조 례 명 : 예천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공적심사 절차를 강화하고, 부적격자에 대한 포상 제한 및 취소 근거를 마련하여 포상 대상자의 적격성을 제고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공적심사를 임의로 생략할 수 있도록 한 규정 삭제(안 제10조)

- 표창장의 경우 예천군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여한다는 근거 마련

나. 포상 수여 금지 조항 마련(안 제12조의2)

- 부적절한 대상자(징계자 등)가 포상을 받지 않도록 제한 규정 명확화

다. 포상 취소 규정 신설(안 제12조의3)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을 받은 자에 대한 포상 취소 규정을 마련하여 포상의 신뢰성 제고

4.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5.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참조: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또는 방문 제출

1) 전자우편(이메일) : hwangseok90@korea.kr

2) 주소 :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청 총무과

3) 팩스 : 054-650-608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총무과(전화: 054-650-683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예천군 홈페이지(www.ycg.kr) 『열린군정-군정소식-입법예고』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중 “15일전”을 “15일 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천군공적심사위원회”를 “예천군공적심사위원회”로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포상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포상을 수여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공적이 있는 사람으로 위원회가 표창의 수여를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재직 중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고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7조에 따른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제2항이 정한 주요비위로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
3. 그 밖에 군수가 포상 계획으로 정하는 자

제1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3(포상의 취소) ① 포상 수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포상을 취소하여야 한다.

1. 포상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주요비위(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폭력, 음주운전 등)에 대한 형사 처벌이 포상 전 3년 이내에 확정된 경우

3. 법령, 조례 등의 규정에서 포상을 수여할 수 없다고 정한 자에게 수여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한 경우 표창 이외의 감사장, 상장 등의 취소는 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포상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 감사장, 상패, 부상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포상절차) ① 제5조, 제6조 및 제8조의5에 따른 포상을 요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군의 실 · 과 · 소장 및 읍 · 면장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붙여서 포상예정일 <u>15일전</u> 에 군 수에게 상신할 수 있다. 다만, 군민 20명 이상이 연서로도 할 수 있다.	제10조(포상절차) ① ----- ----- ----- ----- ----- <u>15일 전</u> ----- -----. ----- -----.
② 제5조에 따른 표창장은 <u>특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천군공 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u>	② ----- <u>예천 군공적심사위원회</u> ----- ----- -----.
<u><신 설></u>	제12조의2(포상금지) 다음 각 호의 <u>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포상을 수여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공적이 있는 사람 으로 위원회가 표창의 수여를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u>
	1. <u>재직 중 징계 또는 불문 경고 처분을 받고 「지방공무원 인사 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7조에 따른 기간이 경과</u>

현행	개정안
	<u>되지 아니한 자</u> 2.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 제2항이 정한 주요비위로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 3. 그 밖에 군수가 포상 계획으로 정하는 자
<u><신 설></u>	제12조의3(포상의 취소) ① 포상 수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포상을 취소하여야 한다. 1. 포상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주요비위(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폭력, 음주운전 등)에 대한 형사 처벌이 포상 전 3년 이내에 확정된 경우 3. 법령, 조례 등의 규정에서 포상을 수여할 수 없다고 정한 자에게 수여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한 경우 표창 이외의 감사장, 상장 등의 취소는 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포상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 감사장, 상패, 부상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예천군 모범공무원 포상 및 향토개발상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예천군 모범공무원 포상 및 향토개발상 운영 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30일

예 천 군



1. 규 칙 명 : 예천군 모범공무원 포상 및 향토개발상 운영 규칙 일
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모범공무원 규정」(대통령령 제36156호, 2026. 3. 3. 시행) 개정
에 따라 모범공무원 수당을 월 5만원에서 월 7만원으로 인상하여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모범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상여금을 월 7만원으로 인상(안 제5조)
 - 「모범공무원 규정」(대통령령 제36156호, 2026. 3. 3. 시행) 개정에 따른 상여금 인상

4. 개정규칙안

- 붙임과 같음

5. 의견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참조: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또는 방문 제출

1) 전자우편(이메일) : hwangseok90@korea.kr

2) 주소 :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청 총무과

3) 팩스 : 054-650-608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총무과(전화: 054-650-683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예천군 홈페이지(www.ycg.kr) 『열린군정-군정소식-입법예고』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모범공무원 포상 및 향토개발상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예천군 모범공무원 포상 및 향토개발상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규칙은 「예천군포상조례」 제4조”를 “규칙은 「예천군 포상 조례」 제4조”로, “포상(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을 “포상”으로 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포상조례”를 “포상조례”로, “향토개발상포상공무원”을 “향토개발상 포상공무원”으로 한다.

- ① 모범공무원 포상(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은 군의 각 실·과장, 사업소장, 읍·면장이 추천하고 향토개발상 포상대상공무원은 읍·면장이 추천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범위안”을 “범위 안”으로, “상여금을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을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 기간”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모병공무원”을 “모범공무원”으로 한다.

- ①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월 70,000원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 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 달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에 “이미지급된”을 “이미 지급된”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예천군포상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 포상(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 및 향토개발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규칙은 「예천군포상조례」 제4조----- ----- 포상 ----- ----- ----- -----.
제2조(추천) ① 모범공무원은 군의 각 실·과장, 사업소장, 읍·면장이 추천하고 향토개발상 포상대상공무원은 읍·면장이 추천한다.	제2조(추천) ① 모범공무원 포상(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은 군의 각 실·과장, 사업소장, 읍·면장이 추천하고 향토개발상 포상대상공무원은 읍·면장이 추천한다.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군 포상조례에 의하여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 및 향토개발상포상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	③ -- 포상조례----- ----- ----- 향토개발상 포상공무원----- -----.
제5조(상여금 지급) ①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월 50,000원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 달로부	제5조(상여금 지급) ① ----- ----- ----- 70,000원----- ----- 지급기간----- ----- 달로부

현행	개정안
<u>터1년간</u>으로 한다. ② 향토개발상 포상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u>범위안</u>에서 매월 10,000원의 <u>상여금을지급</u>하되, 그 <u>지급기간</u>은 포상한 다음달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③ (생략) ④ <u>모범공무원</u>에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상여금증서를 교부하고 향토개발상 포상대상자에게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상여금 증서를 교부한다. 제6조(상여금지급의 중지) ① 모범공무원 및 향토개발상 공무원에게는 다음 <u>각호</u>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u>이미지급된</u> 상여금은 이를 환수하지 아니한다. 1. ~ 4. (생략) ② (생략)	<u>터 1년간</u>-----. ② ----- ----- <u>범위 안</u>----- ----- <u>상여금을 지급</u>하되, 그 <u>지급 기간</u>----- -----. ③ (현행과 같음) ④ <u>모범공무원</u>----- ----- ----- ----- -----. 제6조(상여금지급의 중지) ① --- ----- ----- <u>각 호</u>----- ----- -----. --- <u>이미 지급된</u> ----- -----. 1.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